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6. 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7호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자	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	제출연월일	2026.07.03.
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훈, 최종열

I. 제안내용

-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II. 주요골자

1. 세입

- 일반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2. 세출

-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부담금 등 법정경비
-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긴급 사업

III. 예산안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합계	1,003,095,530	982,337,023	20,758,507	2.11%
일반회계	973,582,284	952,823,777	20,758,507	2.18%
특별회계	29,513,246	29,513,246	0	0.00%
의료급여기금	390,360	390,360	0	0.00%
건축안전	1,022,181	1,022,181	0	0.00%
주차장	28,100,705	28,100,705	0	0.00%

IV. 검토사항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1. 총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003,095,530	982,337,023	20,758,507	2.11%
일	반 회 계	973,582,284	952,823,777	20,758,507	2.18%
특	별 회 계	29,513,246	29,513,246	0	0.00%
	의 료 급 여 기 금	390,360	390,360	0	0.00%
	건 축 안 전	1,022,181	1,022,181	0	0.00%
	주 차 장	28,100,705	28,100,705	0	0.00%

○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1%인 207억 5,850만 7천원이 증가한 1조 30억 9,553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8%인 207억 5,850만 7천원이 증가한 9,735억 8,228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295억 1,324만 6천원으로 변동없음.

2.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계	973,582,284	100%	952,823,777	100%	20,758,507	2.18%
지 방 세 수 입	370,583,768	38.06%	370,583,768	38.89%	0	0.00%
세 외 수 입	113,060,117	11.61%	113,060,117	11.87%	0	0.00%
지 방 교 부 세	18,220,000	1.87%	18,220,000	1.91%	0	0.00%
조정교부금 등	33,871,635	3.48%	16,379,635	1.72%	17,492,000	106.79%
보 조 금	365,860,743	37.58%	362,594,236	38.05%	3,266,507	0.90%
보전수입 등 및 내 부 거 래	71,986,021	7.39%	71,986,021	7.56%	0	0%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감현황을 보면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사항 없으며,
-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의 1.72%인 163억 7,963만 5천원이 편성되었으나, 174억 9,200만원이 증가하여 추경예산안의 3.48%인 338억 7,163만 5천원이 편성되었고,
- 보조금이 기정예산의 38.05%인 3,625억 9,423만 6천원이 편성되었으나, 32억 6,650만 7천원이 증가하여 추경예산안의 37.58%인 3,658억 6,074만 3천원이 편성되었음.

□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변동사항 없음.

3.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
	예산액	구성비 (%)	예산액	구성비 (%)		
합 계	1,003,095,530	100%	982,337,023	100%	20,758,507	2.11%
일반회계	973,582,284	100%	952,823,777	100%	20,758,507	2.18%
의회사무국	6,316,708	0.63%	6,316,708	0.64%	0	0.00 %
감사담당관	293,649	0.03%	293,649	0.03%	0	0.00 %
홍보담당관	2,252,313	0.23%	2,252,313	0.24%	0	0.00 %
문화행정국	197,809,897	20.32%	194,919,217	20.46%	2,890,680	1.48 %
밝은미래국	75,252,255	7.73%	75,151,780	7.89%	100,475	0.13 %
주민생활국	531,393,112	54.58%	519,608,347	54.53%	11,784,765	2.27 %
기획재정국	24,085,323	2.47%	21,198,110	2.22%	2,887,213	13.62 %
공간혁신국	33,109,933	3.40%	32,181,113	3.38%	928,820	2.89 %
도시관리국	3,850,902	0.40%	3,850,902	0.40%	0	0.00 %
안전건설국	47,465,403	4.88%	47,471,747	4.98%	△6,344	△0.01 %
보건소	51,752,789	5.32%	49,579,891	5.20%	2,172,898	4.38 %
특별회계	29,513,246	100%	29,513,246	100%	0	0.00%
의료급여	390,360	1.32%	390,360	1.32%	0	0.00%
건축안전	1,022,181	3.46%	1,022,181	3.46%	0	0.00%
주차장	28,100,705	95.22%	28,100,705	95.22%	0	0.00%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총 207억 5,850만 7천원이 증가했는데, 이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10개 부서에 147억 7,592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은 6개 부서에 59억 9,078만 1천원이 증가되었고, 2개 부서에 △819만 4천원이 감소됨.
-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기정예산액과 동일함.

행 정 복 지 위 원 회 소 관

1. 세입예산안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편성재원은 일반회계가 7개 부서 28건에서 27억 8,725만 2천원이 증가되고, 3개 부서 5건에서 5억 7,241만 6천원 감소됨.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기정예산액과 동일함.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사업명	최종 예산안	2026 기정예산	추경안 총감액
행정지원과	통합돌봄 직원 인건비[국]	44,550	0	44,550
	통합돌봄 직원 인건비[시]	51,975	0	51,975
문화관광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50%)[국]	145,800	129,600	16,200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25%)[시]	72,900	64,800	8,100
체육진흥과	길고양이 중성화(TNR)시술비[국]	17,520	18,000	△480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기]	107,184	85,008	22,176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시]	22,968	18,216	4,752
	길고양이 중성화(TNR)시술비[시]	35,040	36,000	△960
아동청년과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 사업(50%)[국]	9,212	6,875	2,337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50%)[국]	59,798	59,558	240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 사업(50%)[시]	9,212	6,875	2,337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50%)[시]	59,798	59,558	240
복지정책과	긴급복지(50%)[국]	612,678	545,418	67,260

부 서	사업명	최종 예산안	2026 기정예산	추경· 총감액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사업[국]	93,000	89,400	3,600
	사회복지관운영비	3,683,520	3,704,318	△20,798
	긴급복지(25%)[시]	306,339	272,709	33,630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사업[시]	108,500	104,300	4200
사회복지과	장애인연금(50%)[국]	2,276,500	1,866,837	409,663
	장애인활동지원-활동보조 가산급여(50%)[국]	416,015	383,343	32,672
	사랑의복지관 운영	1,207,159	1,129,891	77,268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운영	1,582,112	1,455,740	126,372
	장애인연금(25%)[시]	1,138,250	933,419	204,831
	장애인활동지원-활동보조 가산급여(27.5%)[시]	228,808	210,839	17,969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507,338	505,658	1,680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시90%)	261,035	258,885	2,150
여성보육과	보육사업 운영비[국]	26,556,481	26,093,602	462,879
	가족정책[국]	33,422,381	33,167,867	254,514
	서초 키움센터 운영지원[군]	171,847	156,752	15,095
	보육사업 운영비[시]	46,716,618	46,107,381	609,237
	서울시 자체 보육사업	241,772	222,632	19,140
	가족정책[시]	24,145,017	23,852,832	292,185
어르신행복과	노인복지[국]	58,101,946	58,621,938	△519,992
	노인복지[시]	14,344,616	14,374,802	△30,186

- 특별회계 : 변동없음

2. 세출예산안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47억 7,592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없으며, 부서별 주요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 (추경안 쪽수)	사 업 명	최종 예산안	2026 기정예산	추경안 증감액
행정지원과 (p133)	인력운영비-기준인건비(통합돌봄)	148,500	0	148,500
문화관광과 (p134)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291,600	259,200	32,400
자치행정과 (p135)	서래마을 글로벌빌리지센터 조성	2,112,000	0	2,112,000
체육진흥과 (p136)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2,870,617	2,302,117	568,500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운영	153,120	121,440	31,680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92,000	94,400	△2,400
아동청년과 (p139)	취업능력개발교육 운영	286,650	186,650	100,000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	20,620	20,625	△5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19,596	119,116	480
복지정책과 (p145)	긴급복지	1,225,356	961,976	263,380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운영	410,136	297,336	112,800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249,856	237,856	12,000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5,653,672	5,632,311	21,361
사회복지과 (p148)	장애인복지관 운영	5,072,490	4,733,090	339,400
	장애인 연금	4,553,000	3,733,674	819,326
	장애인 활동지원사업-활동보조 가산급여	832,030	766,686	65,344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447,355	444,967	2,388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971,646	977,432	△5,786
여성보육과 (p151)	영유아 보육료 지원	30,976,663	30,571,771	404,892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820,608	811,632	8,976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3,974,638	3,065,969	908,669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 지원	30,063	18,100	11,963

부서 (추경안 쪽수)	사 업 명	최종 예산안	2026 기정예산	추경안 증감액
	장애아동통합시설 운영지원	483,544	445,264	38,28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971,900	845,500	1,126,400
	첫만남이용권	4,592,133	4,408,000	184,133
	서울형 아이돌봄비	414,000	396,000	18,000
	부모급여 지원사업	26,467,915	26,245,335	222,580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3,461,838	3,306,426	155,412
	서초 초등키움센터 운영비 지원	670,305	639,583	30,722
	서초 초등키움센터 인건비 지원	1,075,225	966,120	109,105
어르신행복과 (p156)	기초연금사업	68,535,853	69,202,718	△666,865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부담금	2,471,171	2,429,602	41,569
	서초50플러스센터 운영지원	981,367	958,367	23,000
	노인요양시설 지원	771,368	741,368	30,000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6,809,955	0	6,809,955
청소행정과 (p158)	종량제봉투 제작	2,126,880	1,481,619	645,261
	재활용 추진	19,488,016	19,435,516	52,500

- 특별회계 : 변동없음

V. 검토의견

세 출 분 야

문화행정국

【행정지원과】

○ 인력운영비-기준인건비(통합돌봄) - 148,500천원

- 정부(보건복지부)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의료·요양 재정 부담이 지속 증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원하는 돌봄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 2024. 3월 제정되어 2026.3월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2025. 9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건의료, 건강, 요양, 돌봄, 주거 등 5대 분야 75개 서비스를 통합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임.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전담공무원 대규모 신규채용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을 고려해 2026년도 신규채용 등 일부에 대해 인건비를 한시 지원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부담해 통합돌봄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 요구되었음.
- 기존 기준인건비(돌봄SOS센터)는 서울시 보조금 지원에 의한 서

울시민 대상으로 아래 표와 같은 차이점이 있고, 관련 법률에 의한 전국 공통사업으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있으며, 통합돌봄서비스 지속 운영에 필요한 직원 인건비는 향후 매년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구 분	통합돌봄 (보건복지부)	돌봄SOS (서울시)
추진근거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동행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
지원내용	보건의료, 건강, 요양, 돌봄, 주거 5대 분야 75개 서비스 통합원스톱 제공	5대 돌봄서비스 (일사재가, 단기시설입소,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제공

【문화관광과】

○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 32,400천원

- 전통사찰 내 시설 및 공간의 보수정비사업 지원을 통해 전통사찰의 원형을 보존하고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사업으로, 우면산 소재 대성사에 대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 259,200천원이 편성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에 대해 사찰 자부담율을 경감(20% → 10%)하고, 국비 및 지방비 부담률을 상향(80% → 90%)하여 확정 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이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고자 추경 요구액으로 제출되었음.

※ 추경 요구액 상세

계	국 비	시 비	구 비	비고
32,400천원	16,200천원	8,100천원	8,100천원	

[대한불교조계종 우면산 대성사 현황]

- 소재지 : 서초구 서초동 산 140번지
- 주 지 : 법안스님 (서초 사암연합회 회장)
- 주요의미 : 백제불교 초전 법륜성지

- 본 사업은 대성사 대웅전 및 요사채 단청 및 주변 보수 정비를 통해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자치행정과】

○ 서래마을 글로벌빌리지센터 조성 - 2,112,000천원

-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내국인 주민과의 다양한 문화교류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서래마을 글로벌빌리지센터에 대한 내·외국인 이용자 증가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글로벌빌리지센터 인근 서래마을 공영주차장에 건축물을 증축해 보다 활발한 문화교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 총 사업비 3,392,000천원 중 2025년도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00,000천원, 서울시 특별교부금 980,000천원의 재원이 확보된 상황에서 부족한 2,112,000천원 확보를 위해 금번 추경 요구액으로 제출되었음.
- 본 사업은 기존 글로벌빌리지센터(서초구 서래로 28 3층 / 연면적 159.9 m^2)는 임차건물에서 운영 중으로 금번 사업을 통해 서래마을 공영주차장(반포동 90-7)에 연면적 754.78 m^2 (지상1·2층) 규모로 확장 이전되며, 글로벌도서관과 커뮤니티 공간 등 다

양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교류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서래마을 글로벌빌리지센터 현황]

□ 사업개요

- 설치 및 개관 : 서초구 서래로 28(3층), 2008. 6. 4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18조
- 사업예산 : 서울시 분기별 예산교부(글로벌도시정책관 다문화담당관)
- 시설현황 : 민원실, 글로벌도서관, 강의실 2개(159.9㎡)
- 사업내용 : 문화지원, 교육지원, 상담 등 행정 지원, 홍보 등
- 이용인원 (2025년) : 약 18,173명

□ 서초구 등록외국인 현황

(단위:명)

계	한국계 중국	중국	프랑스	미국	일본	베트남	타이완	영국	캐나다	인도	호주	기타
4,847	378	760	482	740	329	186	141	133	138	154	69	1,337

※ 서울시 등록외국인(90일이상 장기체류) 275,049명 [프랑스인 : 3,712명]

□ 2026년 운영 예산 : 389,090천원 (시비 376,784 / 구비 12,306)

구 분	합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기타
총 계	389,090	166,258	128,677	94,155	
시비보조금	376,784	166,258	117,571	92,955	
구비보조금	12,306	-	11,106	1,200	

【체육진흥과】

○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 568,500천원

- 우리구 공공체육시설(직영 5, 위탁 9)에 대한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예산액 2,302,117천원 대비 24.6%인 568,500천원의 추경 요구액이 제출되었음.

- 이는, 우리구 위탁 공공체육시설인 언남문화체육센터 내 운영 중인 실내골프연습장의 불가피한 이전(4층 → 6층) 필요성¹⁾으로

1) 언남고 AI융합실 구축 추진

이에 따른 설치 공사비(서울시와 우리구의 5:5 매칭사업)로 편성되었고, 서울시 재원은 2025년도에 기 확보된 상태에서 시설 소유권자인 서울시교육청과 기관별 층별 변경사용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어 추경예산을 통해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됨.

※ 언남문화체육센터 현황

위 치	규 모	개관일	위탁기간	수탁법인	주요 프로그램
동산로13길 35 (양재2동)	지하2층~지상7층 연면적 14,317㎡	2006.12.01.	2025.04.01. ~ 2026.10.19.	(사)한국 문화스포츠진흥원	수영, 헬스, 골프, GX, 문화강좌 등

※ 골프연습장 이전 조성 규모

기 존 (4층)	신 규 (6층)
면적 741㎡ / 스크린골프 1면, 연습타석 13석, 퍼팅장 2석	면적 732㎡ / 스크린골프 1면, 연습타석 13석, 퍼팅장 2석

- 본 사업은 9월 설계용역 발주, 연내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며, 가상현실시스템을 적용한 골프연습장 이전 조성을 통해 보다 쾌적한 생활체육공간 제공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운영 - 31,680천원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운영”은 국비 7 : 시비 1.5 : 구비 1.5 비율의 사업비 구성으로 당초 예산액 121,440천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애인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비 증액에 따라 구비 매칭분 4,752천원을 확보하고자 추경 요구액이 제출되었음.

※ 추경 요구액 상세

계	국 비	시 비	구 비	비고
31,680천원	22,176천원	4,752천원	4,752천원	

- 본 사업은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스포츠복지 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만 5세~69세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고, 지원금액은 월 최대 110천원으로 장애인에게 다양한 생활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 사업임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우리구 지원대상

구 분	2026	2025	2024	2023	비고
대 상(명)	5,365	5,494	5,617	5,726	

※ 최근 3년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2025		2024		2023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126,720	117,023	114,840	65,107	59,280	20,758

밝은미래국

【아동청년과】

○ 취업능력 개발교육 운영

(최종예산액 240,000천원, 기정예산액 140,000천원, 증액 100,000천원)

- 본 사업은 미취업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어학시험 및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의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준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사업임. 2025년도

에는 총 140,852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사업 개시 후 약 6개월(2월~8월)만에 전액 소진될 정도로 높은 참여 수요를 보였으며, 이는 청년들의 자격증 취득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2026년도에도 본예산 140,000천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을 분기별로 균등 배정하여, 2분기까지 650명에게 67,228천원이 지원되었고, 예산소진 속도는 1분기 9일, 2분기 2일로 빨라지고 있음.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은 신청 추세가 유지될 경우 신청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됨. 이에 사업비 100,000천원을 증액하여 500명을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경 반영 시 총사업비는 240,000천원으로 확대됨.

	모집기간	신청인원/신청금액	지원인원/지원금액
1분기	3.3. ~ 3.11.	369명/34,755천원	341명/33,177천원
2분기	6.1. ~ 6.2.	322명/35,036천원	309명/34,050천원
합계		691명/69,791천원	650명/67,228천원

※ 지원기준 상이 및 미달 제외하여 신청금액과 지원금액 차액 발생

- 이와 같이 전년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었고,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신청 수요가 확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금번 추경은 청년 구직활동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정책 수혜를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의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취업 준비 과정에서 자격증 취득 비용은 청년층에게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응시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 다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새로운 재정수요 또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볼 때, 본 사업은 2025년도에 이미 6개월 만에 예산이 전액 소진되는 등 높은 수요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음. 다만, 2025년 단년도 실적만으로 수요의 지속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재정 운용을 위해 2026년도 본예산을 전년도와 유사한 140,000천원규모로 우선 편성한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금번 추경 편성은 청년 취업지원 정책의 지속성과 주민 체감도를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향후에는 최근 2개 연도 사업 실적, 신청률 및 집행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적정 사업비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

○ 긴급복지

(최종예산액 1,225,356천원, 기정예산액 961,976천원, 증액 263,380천원)

- 본 추경안은 실직, 질병, 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상 긴급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위기 가구의 생활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고,

- 본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및 일정 재산·금융재산 기준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주급여와 교육비·의료비 등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위기가구 발생 가능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지원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이고,
- 금번 추경은 서울시의 ‘2026년 긴급복지 1차 변경내시’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를 추가 편성하려는 것으로, 국비 67,260천원, 시비 33,630천원, 구비 162,490천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를 961,976천원에서 1,225,356천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특히 기존 구비 부담액이 143,849천원에서 306,339천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 재정 부담은 확대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긴급복지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하여 신속한 공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의 심화 및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복지사업이라는 점에서, 변경내시에 따른 지방비 매칭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며,
- 따라서 본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법정 매칭비 반영 및 긴급복지 수요 대응을 위한 예산 조정으로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 유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됨.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운영

(최종예산액 300,000천원, 기정예산액 187,200천원, 증액 112,800천원)

- 본 추경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응하여 의료·요양·돌봄·주거·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편성된 신규 사업으로, 고령화 심화 및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복지 전달체계 강화 차원의 사업이라 할 수 있고,
- 본 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만 65세 미만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주거환경개선, 재활운동, 복약지도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초온(On)돌봄사업’과, 급성기·요양병원 퇴원환자 중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에 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퇴원환자 연계 수당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와 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생활 유지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 특히 정부는 기존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의료·복지·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6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 구축 필요성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서초구 역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음.
- 금번 추경은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비 매칭분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총 112,800천원을 증액하여 사업비를 187,200천원에서 300,000천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이 중 구비 부담분이 105,000천원 규모로 신규 반영됨에 따라 재정 부담은 증가하는 측면이 있으며, 그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고,

세부 내역				
사업명	편성목	확정	당초	증감액
합 계		300,000천원	187,200천원	112,800
서초온(ON) 돌봄사업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95,000천원	184,600천원	110,400
		국 88,500천원 시 103,250천원 구 103,205천원	국 85,200천원 시 99,400천원	국 3,300 시 3,850 구 103,250
퇴원환자 연계 수당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5,000천원	2,600천원	2,400
		국 1,500천원 시 1,750천원 구 1,750천원	국 1,200천원 시 1,400천원	국 300 시 350 구 1,750

- 다만, 본 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필요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의료·돌봄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장기입원 예방 및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효과 또한 기대된다는 점에서,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매칭 예산 편성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 따라서 본 추경예산안은 관련 법령 시행에 따른 지역 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국·시비 매칭비 반영을 위한 예산 조정으로서,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마련과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

치로 소요됨.

【사회복지과】

○ 장애인복지관 운영

(최종예산액 5,060,870천원, 기정예산액 4,721,470천원, 증액 339,400천원)

-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재활·자립 지원과 상담, 교육, 문화·여가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복지 기반시설로 기능하고 있고, 특히 장애인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적정 수준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은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종사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 또한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법정 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 재정지원이 요구되는 사업에 해당함.
- 추경안은 서울시 변경내시에 따라 시·구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신규사업의 확대라기보다는 확정내시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서초구립 한우리 정보문화센터 운영 관련 민간위탁금 210,621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랑의복지관 운영 관련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29,179천원

을 증액하는 한편, 종사자 복지포인트 사업비 조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보조 400천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임.

- 특히 증액 예산의 대부분은 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조정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서울시 확정내시 반영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장애인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연속성 확보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아울러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운영 공백 없이 지속적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 수준의 운영재원 확보는 공공복지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추경안은 서울시 변경내시에 따른 시·구 매칭비율 조정과 장애인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정 운영경비 및 종사자 인건비 조정분 등을 반영하기 위한 편성 취지는 타당해 보이고,
-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의 핵심 거점시설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과 복지서비스의 지속성과 공공성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금번 추경 예산 편성의 필요성도 인정되며, 다만, 복지관 운영비 중 인건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중장기적 재정 부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도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장애인연금

(최종예산액 4,553,000천원, 기정예산액 3,733,674천원, 증액 819,326천원)

- 본 사업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과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공적급여 제도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기본적 생활 유지와 사회참여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장애 유형 확대와 장애 정도 판정기준 완화 등으로 제도 적용 대상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안정적인 급여 지급을 위한 재정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산출근거 : 지급 금액

(단위 : 원)

구 분	생계·의료		생계·의료(시설)		주거·교육·차상위		차상위 초과자	
	65세 미만	65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급여	349,700	-	349,700	-	349,700	-	349,700	-
부가급여	90,000	439,700	-	-	80,000	80,000	30,000	50,000
합계	439,700	439,700	349,700	-	429,700	80,000	379,700	50,000

- 본 추경안은 당초 예산 편성액 3,733,674천원 대비 819,326천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국·시·구비를 조정하려는 사항이며, 당초 편성된 예산은 2025년도 실제 집행액(약 42억 4,700만원) 대비 낮은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2026년도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전년 대비 2.1% 인상됨에 따라 자연

증가분이 발생하고 있으며,

- 아울러 2026년 7월부터 뇌장장애가 신규 장애유형으로 포함되고, 간 장애의 심한 장애 기준 확대 및 심장·호흡기·장루·요루장애의 심사기준 완화 등이 예정되어 있어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실제로 2026년 6월 기준 이미 연간 편성예산의 약 60%가 집행된 상태로,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 안정적인 급여 지급이 곤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가 재원 확보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장애인연금 사업은 법정 의무지출적 성격이 강한 사회보장사업으로서 수급요건 충족 시 급여 지급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며, 급여 중단이나 지연은 수급자의 생계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이고, 금회 증액분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비율로 재원이 분담되는 구조로 편성되어 있어 구 재정 부담이 전액 자체 부담으로 발생하는 사업은 아니며,
- 다만 향후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와 급여 현실화 기조가 지속될 경우 관련 재정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본 예산 편성 시에는 최근 집행 추이와 제도 변경 사항 등을 보다 면밀히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따라서 본 추경안은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장애 유형 확대 및 심사 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대상 증가, 그리고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 변경

등을 반영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려는 사항으로, 장애인연금 사업의 법정·의무적 성격과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금회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됨.

○ 장애인활동지원-활동보조 가산급여

(최종예산액 832,030천원, 기정예산액 766,686천원, 증액 65,344천원)

- 본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최종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활동보조 가산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고난도 돌봄 대상자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복지제도로서, 특히 최종증장애인의 경우 돌봄 강도가 높고 업무 부담이 큰 특성상 활동지원사 확보와 지속적인 서비스 연계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본 사업은 활동지원사에게 별도의 가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서비스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돌봄체계를 유지하려는 제도적 취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금회 추경안은 당초 가내시를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을 보건복지부의 2026년도 확정 내시액에 맞추어 증액 편성하려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기존 766,686천원에서 832,030천원으로 65,344천원이 증액되는 내용이며,

- 위 사업은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최종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사가 제공하는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해 시간당 가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의 장애 정도와 돌봄 난이도가 매우 높은 특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인력 연계가 필수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활동지원 인력 부족과 돌봄 기피 문제는 최종증장애인의 서비스 공백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과 적정 재원 확보는 사업 운영상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본 사업은 국비·시비·구비가 함께 매칭되는 보조사업으로서, 금회 증액분 또한 국비 50%, 시비 및 구비 분담 구조에 따라 편성된 사항으로 가산급여는 일반 활동지원 수가와 별도로 최종증 돌봄에 대한 추가 보상 성격을 갖고 있어 활동지원사의 근무 유인을 높이고 서비스 지속성을 확보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최종증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과 활동지원사 기피완화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금회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최종증 장애인 돌봄 수요 증가와 활동지원 인력 확보 문제 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에는 대상자 증가 추이와 실제 집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다 정밀한 본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여성보육과】

○ 영유아 보육료 지원

(최종예산액 30,976,663천원, 기정예산액 30,571,771천원, 증액 404,892천원)

- 본 추경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보육료, 기관보육료 및 연장보육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육료 단가가 2026년 7월부터 인상됨에 따라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자치구 부담분을 반영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이며, 이번 추경을 통해 총 404,892천원(국비 182,201천원, 시비 155,883천원, 구비 66,808천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임.
- 세부적으로 보면 기본보육료는 만0세 567천원에서 584천원, 만1세 500천원에서 515천원, 만2세 414천원에서 426천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으며, 기관보육료 또한 연령별로 함께 조정된 것으로, 이는 보육현장의 운영 여건 변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유지 등을 고려한 정부 정책 방향에 따른 조치로 보이고,
- 또한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지원현황은 총 56,026명, 집행액은 약 17,760,375천원으로 집행률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영유아 가정의 보육비 부담 경감과 보호자의 경제활동 지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국·시비 매칭사업의 특성상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확보 또한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 따라서 본 추경안은 보육료 단가 인상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 매칭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영유아 보육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사료됨.

○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최종예산액 3,974,638천원, 기정예산액 3,065,969천원, 증액 908,669천원)

- 본 추경안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근무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한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보육교사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영아반 담임교사, 특수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교사 겸직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보육교사에게는 월 280천원, 연장전담교사에게는 월 140천원, 교사 겸직 원장에게는 월 75천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 금번 추경은 교육부 및 서울시의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보육교사 근무 환경개선비 단가가 2026년 1월부터 인상됨에 따라 추가 소요예산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총 908,669천원(국비 272,601천원, 시비 445,248천원, 구비 190,82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래와 같고,

세출내역				
구분	기정액	최종예산액	증감액	증감사유
계	3,065,969	3,974,638	908,669	교육부 및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추가 편성 필요 (26년도 근무환경개선비 수당 인상)
국비(30%)	919,791	1,192,392	272,601	
시비(49%)	1,502,325	1,947,573	445,248	
구비(21%)	643,853	834,673	190,820	

- 세부적으로 보면 보육교사(8시간 기준)의 경우 월 지원액이 기존 260천원에서 280천원으로, 연장전담교사(4시간 기준)는 130천원에서 140천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영아반 교사 505명, 연장전담교사 57명 및 교사 겸직 원장 28명에 대한 추가 지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보육현장에서는 보육교사의 업무강도 증가와 인력 이탈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통하여 안정적인 보육인력 확보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시비 매칭사업의 특성상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확보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 따라서 본 추경안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인상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 매칭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사료됨.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최종예산액 1,627,400천원, 기정예산액 501,000천원, 증액 1,126,400천원)

- 본 추경안은 서울교육대학교의 어린이집 무상사용 연장 불가 통보에 따라 기존 서울교대사향어린이집의 이전을 추진하고, 보육공백을 방지함과 동시에 재원아동의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공

립어린이집 이전 및 시설개선을 추진하려는 사업임.

- 위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제15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서초동 사임당로14길 39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어린이집 이전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는 내용이며, 사업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연면적 $358.25m^2$ 으로, 서울교육대학교와 서초구가 2016년 어린이집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2018년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으나, 협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2025년 11월 서울교육대학교 측으로부터 무상사용 연장 불가 통보가 이루어졌고, 이후 이전 대상지 검토를 거쳐 2026년 6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짐.
- 금번 추경은 어린이집 이전에 필요한 임차료 및 리모델링 공사비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총 1,126,40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세부적으로는 당해연도 임차료 3개월분에 대한 사무관리비 59,400천원과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시설비 1,053,000천원, 공사 감리비 14,000천원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그 중 시설비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고,

시설비 산출내역

(단위:천원)

구분	요구액	산출내역	비고
시설비	1,053,000	서울교대사항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 = 1,041,000천원	$4,927\text{천원} * 358m^2 * 0.65$ (기존 골조를 활용한 리모델링 공사기준(신축공사비의 65%) 적용) ※ 2024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참고
		서울교대사항어린이집 해체계획서 작성 용역 = 12,000천원	

※ 전체 공사비 중 105,000천원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확보 예정

- 리모델링 공사비는 기존 골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으며, 「2024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상 리모델링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전체 공사비 중 일부는 향후 국·시비 보조금으로 확보 예정으로 보여지며,
- 국·공립어린이집은 공공보육 기반 확충과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재원아동의 보육 연속성을 유지하고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이전 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 개선 또한 영유아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본 사업은 대규모 시설비가 수반되는 만큼 향후 공사 추진 과정에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공사 일정 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따라서 본 추정안은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전에 따른 보육공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공공보육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집 이전 및 시설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첫만남이용권

(최종예산액 4,592,133천원, 기정예산액 4,408,000천원, 증액 184,133천원)

- 본 추정안은 출생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와 사회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에 대한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최근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출산 초기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본 사업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를 대상으로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첫째아에게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에게는 3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용품 구매 및 양육 관련 비용 등에 활용할 수 있어 출산가정의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 금번 추경은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의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추가 지원 수요가 반영되면서 이에 따른 자치구 부담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 하려는 것으로, 총 184,133천원(국비 84,417천원, 시비 49,858천원, 구비 49,858천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시 전체 추가 지원 인원에 서초구 배정비율(4.33%)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첫째아 51.79명에 대한 지원금 103,582천원과 둘째아 이상 26.85명에 대한 지원금 80,551천원을 각각 반영한 것으로 아래와 같고,

세부 산출내역

(단위:천원)

구분	산출내역	총금액
첫째아	2,000천원×51.79명	103,582
둘째아 이상	3,000천원×26.85명	80,551
총금액		184,133

※ 서울시 전체 추가 지원 인원(첫째 1,196명, 둘째 이상 620명)에 서초구 배정 비율(4.33%)을 적용하여 인원 산정

- 또한 본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특성상 변경내시에 따른 지방비 매칭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으로, 적기에 구비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산 반영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동 추경안은 변경내시에 따른 추가 지원 수요를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담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사료됨.

○ 부모급여 지원사업

(최종예산액 26,467,915천원, 기정예산액 26,245,335천원, 증액 222,580천원)

- 본 추경안은 영아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대한 것으로, 「아동수당법」 제4조에 근거한 국·시비 보조사업임. 최근 저출산 및 양육비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영아기 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본 사업은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부모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영아기 집중 돌봄이 필요한 시기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가정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 금번 추경은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의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추가 지원 수요가 반영되면서 이에 따른 자치구 부담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하려는 것으로, 총 222,580천원(국비 100,161천원, 시비 85,693천원, 구비 36,726천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는 기정예산 26,245,335천원 대비 약 0.8% 증가한 규모임.
-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0세 아동 지원금 148,387천원과 1세 아동 지원금 74,193천원을 각각 반영한 것으로 아래와 같고, 추가 지원 대상 증가에 따라 소요예산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이며, 또한 본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의 특성상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확정내시에 따라 구비 부담분 확보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으로 확인됨.

산출내역		
(단위:천원)		
구분	산출내역	총금액(원)
0세	1,000천원×148.4명	148,387
1세	500천원×148.4명	74,193
총금액		222,580

- 최근 양육비 및 돌봄비용 증가로 인해 영유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급여 지원은 영아기 가정의 양육 안정성 확보와 초기 양육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가정양육 선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본 추경안은 확정 내시에 따른 추가 지원 수요를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담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영아기 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사료됨.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최종예산액 3,461,838천원, 기정예산액 3,306,426천원, 증액 155,412천원)

- 본 추경안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근거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 본 사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시설보육 중심의 지원체계 외에도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양육 방식에 따른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모의 양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고,
- 금번 추경은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의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추가 지원

수요가 반영되면서 이에 따른 자치구 부담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하려는 것으로, 총 155,412천원(국비 69,936천원, 시비 59,834천원, 구비 25,642천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기정예산 3,306,426천원 대비 약 4.7% 증가한 규모이며,

-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월 10만원 기준으로 약 129.5명에 대한 12개월분 지원액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추가 지원 대상 증가에 따라 소요예산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이고, 또한 본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확인됨.
- 최근 양육비 및 돌봄비용 증가로 인해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일정 부분 경감하고 가정 중심의 돌봄환경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영유아 양육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양육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정책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 따라서 본 추경안은 확정내시에 따른 추가 지원 수요를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담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사료됨.

○ 서초 초등키움센터 인건비 지원

(최종예산액 1,075,225천원, 기정예산액 966,120천원, 증액 109,105천원)

- 본 추경안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초 초등키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종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근거한 국·시비 보조사업임. 최근 초등돌봄 수요 증가와 돌봄 공백 해소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본 사업은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일시 돌봄, 급·간식 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7개소의 초등키움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장 및 돌봄교사 등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학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 금번 추경은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의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려는 것으로, 총 109,105천원(균특 11,771천원, 시비 82,522천원, 구비 14,812천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는 기정예산 966,120천원 대비 약 11.3% 증가한 규모임.
-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센터장 및 돌봄교사 기본급 인상과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추가 지원금 39,235천원, 종사자 인건비 시비지원 추가분 68,790천원 및 처우개선비 1,080천원을 각각 반영한 것으로 아래와 같고, 특히 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사항으로, 최근 인건비 상승 및 돌봄서비스 수요 확대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짐.

산출내역		
(단위:천원)		
구분	세부내용	총금액
센터장 및 돌봄교사 기본급	기본급 인상등에 따른 국시비 추가 교부	39,235
종사자 인건비 시비지원 추가분	기본급 및 정액급식비 수당 인상 등에 따른 시비 추가 교부	68,790
처우개선비(구비)	월 90천원 x 3명 x 4월	1,080
총금액		109,105

- 초등키움센터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 부담 완화와 아동의 안전한 방과 후 돌봄환경 조성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적정 인력 운영 또한 필요한 요소로 보이고, 아울러 본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의 특성상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 따라서 동 추정안은 초등키움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증가분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담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초등돌봄서비스 제공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사료됨.

【어르신행복과】

○ 기초연금사업

(최종예산액 68,535,853천원, 69,202,718천원, 감액 666,865천원)

- 본 사업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표적인 노인소득보장 제도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으며,
-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빈곤 완화와 기본적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사회보장제도로서,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단독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 속에서 노후 소득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일정 소득 이하 어르신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속성과 안정성이 중요한 사업으로 보임.
- 금회 추경안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도 기초연금 확정 내시액 통보에 따라 당초 본예산 대비 666,865천원을 감액 편성하려는 사항으로, 당초 예산은 가내시를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이후 중앙정부의 확정 내시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규모가 조정됨에 따라 이에 연동하여 시비 및 구비 부담액도 함께 감액 조정되는 구조로 세부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고,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본예산(가내시)	확정내시	증감액
국고보조금	55,362,174	54,828,682	△533,492
광역보조금	6,920,272	6,853,586	△66,686
자체재원	6,920,672	6,853,585	△66,687
합계	69,202,718	68,535,853	△666,865

- 본 사업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비율로 재원이 분담되는 보조사업으로서, 금회 감액분 역시 국비 감소 규모에 따라 지방비가 연동 조정되는 사항으로 보이고, 또한 월 평균 약 1만 7천여 명의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대규모 사회보장사업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확정 내시 기준에 맞춘 예산 조정은 재정 운용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기초연금은 법정·의무적 성격이 강한 현금성 사회보장사업으로서 대상자 자격 충족 시 안정적인 급여 지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며, 금회 추경은 신규 사업 확대나 지원 축소에 따른 구조적 변경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에 따른 재원 조정 성격의 감액이라 할 것으로,
- 따라서 본 추경안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국·시·구비를 조정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하려는 사항으로, 중앙정부 확정 내시에 따른 재원 조정 필요성과 사업의 안정적 운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금회 추경안의 감액 편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국고보조금반환금

(최종예산액 6,809,955천원, 기정예산액 0원, 반환금 6,809,955천원)

- 본 추경안은 “복합복지타운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및 그에 따른 발생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을 편성하려는 사항으로, 동 사업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원동 225번지 일원에 노인요양시설, 재가복지시설, 보건지소, 도서관,

체육시설 등을 복합화한 서초형 복합복지타운을 조성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약 1,355억원 규모로 계획된 바 있고,

- 2019년 건립 추진계획 수립 이후 중앙투자심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심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유재산심의 등 주요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서울시 공공건축심의를 거쳐 설계공모 절차까지 진행된 상황이었으나, 2024년 11월 국토교통부의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에 해당 사업부지 전체가 포함되면서 개발행위 제한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기존 사업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져 설계공모 중단 및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그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추진 경과	
2019년 4월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건립추진계획 수립
2021년 3월	행정안전부 중앙행정투자심사 완료
2021년 9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원안가결”심의통과
2022년 1월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결정
2023년 7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보완, 원안가결)
2023년 10월	공유재산심의통과
2024년 1월	건축기획
2024년 10월	서울시 공공건축심의 통과
2024년 10월	설계공모 공고
2024년 11월	사업부지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모중단

- 금회 추경안은 사업 중단에 따라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국고보조금을 중앙부처에 반납하기 위한 것으로, 총 반납 규모는 6,809,955천원이

며, 이 중 국고보조금 원금이 6,297,600천원, 이자 반납금이 512,35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세부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요양시설 조성 관련 교부금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체육센터 조성 관련 기금보조금 등이 반납 대상이며,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2021~2022년도 교부금 5,097,600천원이,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교부금 1,200,000천원 전액이 반납되는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아래와 같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교부금 합계
교 부 액	노인요양시설 (보건복지부)	1,699,200 (국고보조금)	3,398,400 (국고보조금)	4,078,080 (균특보조금)	-	9,175,680
	국민체육센터 (문체부)	200,000 (기금보조금)	400,000 (기금보조금)	300,000 (기금보조금)	300,000 (기금보조금)	1,200,000

※ 반납(빨간색 테두리)

- 이는 사업 자체의 정책적 필요성이 소멸된 데 따른 것이 아니라, 상위 행정계획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기존 부지에서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진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국고보조금은 보조 사업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재원인 만큼, 사업 중단에 따라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업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여짐.
- 따라서 본 추정안은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복합복지타운 조성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및

발생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으로, 사업 중단에 따른 집행 불가 예산을 정산·반납하려는 것으로서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며, 다만 장기간 추진된 대규모 투자사업이 외부 정책 변화에 따라 중단된 사례인 만큼,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개발계획 변동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보다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청소행정과】

○ 종량제봉투 제작

(최종예산액 2,027,479천원, 기정예산액 1,382,218천원, 증액 645,261천원)

-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일반 및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으로, 폐기물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담 원칙에 기반한 쓰레기 종량제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 주요 사업내용은 일반폐기물류 종량제봉투(가정용·영업용·재사용·공공용 등) 제작,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스티커 제작, 종량제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규격봉투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처리를 위한 기초 행정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 금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382,218천원 대비 645,261천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증액률은 약 46.7% 수준이며, 세부적으로는 일반폐기물류 종량제봉투 제작비 540,545천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스티커 제작비 104,716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부서에서는 최근 중동사태 등에 따른 국제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종량제봉투 제작단가가 인상된 점과, 2026년 하반기 재건축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로 종량제봉투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점을 추경 편성 사유로 제시하고 있고, 실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종량제봉투 제작 예상량은 총 2천 3백 23만 1천매로 전년도 제작량 1천 947만 8천 매 대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아래와 같고,

'26년도 종량제봉투 제작 현황					
(단위:천원/천매, '26.6.30.기준)					
구 분	2026			2025	2024
	상반기	하반기(예상)	합 계		
제작량	12,437	10,794	23,231	19,478	19,648
소요예산	958,934	1,068,548	2,027,479	983,693	958,338

-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 또한 20억 2,747만 9천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상반기 제작량과 하반기 예상 제작량을 비교할 때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수요 발생이 전망되고 있어 추가 제작 필요성은 상당 부분 인정되는 측면이 있고,
- 아울러 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운영을 위한 필수 소모성 물품으로서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주민 불편은 물론 생활폐기물 수

거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 수준의 재고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체계 유지가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추경안은 국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제작단가 인상과 재건축 입주 증가에 따른 종량제봉투 수요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 처리행정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 생활편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제작·공급을 위한 예산 반영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이고, 나아가, 종량제봉투 제작비는 원재료 가격 변동, 재건축 입주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 사업으로, 향후에도 연도별 제작량 추이와 재고 현황, 단가 변동 요인 등에 대한 면밀한 수요 대응과 재정관리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면, 사업의 안정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사료됨.

○ 폐형광등 처리비

(최종예산액 52,500천원, 증액 52,500천원)

- 본 추경안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형광등을 적기에 수거·처리하여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체계를 유지하고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폐형광등 처리비」 사업에 대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자체사업임. 폐형광등은 수은이 포함된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해당하는 만큼 일반폐기물과 구분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간 적치 시 파손 및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점에서 안정적인 처리체계 유지가 필요한 사업으로 보임.
- 본 사업은 관내에서 수거된 폐형광등을 재활용집하장에 적치한 후 전

문 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내용으로, 2026년 하반기 예상 발생 물량 약 150,000개를 대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최근 4개년 처리실적을 보면 연간 약 28만~35만 개 수준의 폐형광등이 처리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처리량 또한 약 161,90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처리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래와 같고,

산출내역표

○ 2026년도 폐형광등 처리 현황

(단위 : 개, '26.6.30.기준)

구 분	2026		2025	2024	2023
	상반기	하반기(예상)			
처리량	161,907	150,000	299,964	357,555	286,865

○ (추경액) = [하반기 집행예상액(처리량 × 단가)]

- 금번 추경은 기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지원되던 폐형광등 처리 지원금이 2026년 5월 조기 소진됨에 따라, 기존 무상처리 체계가 사실상 중단되어 구비를 통한 유상처리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편성하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총 52,500천원을 신규 편성하여 하반기 처리비용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출자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공문을 통해 폐형광등 처리 예산 확보 및 위탁처리체계 구축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등에 따라 2027년까지 수은 함유 형광등 생산이 중단될 예정이나,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 강화에 따라 현재 형광등 제조·수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자의 재활용분담금 또한 감소하면서 EPR 재활용지원금이 조기

소진됨에 따른 것임.

-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말 기준 폐형광등 재활용처리량이 이미 연간 재활용의무량의 52%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지원금 소진이 예측되어 지난 4월 중앙정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폐형광등 처리예산 확보와 적정처리 방안 마련을 요청한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 세부 산출내역은 하반기 예상 처리물량 약 150,000개에 개당 처리단가 350원을 적용하여 총 52,500천원을 산정한 것으로, 최근 처리실적과 발생 추이를 고려한 추계로 보이고, 또한 향후 재활용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에도 적정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한 위탁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치구 차원의 자체 처리예산 확보 필요성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됨.
- 폐형광등 수거·처리가 지연될 경우 재활용집하장 적치 증가와 함께 주민 배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만큼 적기 예산 확보와 안정적인 처리체계 유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아울러 향후 형광등 생산·수입이 전면 중단되더라도 기 보급된 제품의 교체 주기에 따라 폐형광등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추경안은 기존 EPR 기반 무상처리 체계의 중단에 대응하여 폐형광등 처리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주민 불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총 합 검 토 의 건

-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의 규정에 따라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미 편성된 예산 중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및 국시비 보조금 분담비율 변동 등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임.
-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총 규모 208억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해당없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9,73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8%가 증가한 208억원이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조정교부금 등 175억원, 보조금 33억원이 각각 증가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해당없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기능별 현황으로는 사회복지 분야 112억원, 보건 분야 22억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2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억원 등으로 세출편성 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경비 반영을 위해 통합돌봄 직원 인건비,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 사업,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활동보조 가산급여, 노인복지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 서래마을 글로벌빌리지센터 조성, 서초50플러스센터 운영지원 등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 부모급여 지원사업, 종량제 봉투 제작, 재활용 추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긴급 현안 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 법정 의무경비를 우선 반영하는 한편, 주민불편 해소와 생활밀착형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볼 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확보된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세입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고, 이에 따른 법정 의무경비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긴급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VI. 참고자료

1.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
2.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조직별)
3.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4. 특별회계 세출 총괄표(조직별)
5. 2025년도 일반회계 간주처리내역(1억원 이상)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2조, 제145조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제45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2조